

<붙임>

김 수입관련 법규 및 절차

□ 김/김자반 원초 수입 관계 법령 및 절차

○ 관련법령

- 해양수산부장관령 2014년 제 46호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46/Permen-KP/2014

- 해양수산부장관령 2013년 제 52A호

Keputus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52A/KEPMEN-KP/2013

- 해당법령에 따르면, 생명주기를 가진 수생하는 모든 것들을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김자반 원초 또한 수산물에 해당됨.
- 수산물 관할부서는 해양수산부(DKP)이며, 수산양식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이 관할부서임.
-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API-P 혹은 API-U 를 소지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수산물 제품의 수입허가 (Suratalzin Pemasukan Hasil Perikanan)도 의무사항임. 수입허가의 발급은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관할임.
- 인도네시아로 수산물 수입은 하기 3가지 분류로만 가능
 - API-P 소지자: 가공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 API-U 소지자: 가공 없이 제 3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의 내부 소비 목적이거나, Promotion등을 목적으로 수입 하는 경우
- 1) API-P 소지자 (46/Permen-KP/2014 제 6조 3항 에 따라):
 - a. SKP 그리고 PMTT,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서 (HACCP / ISO 22000) 사본
 - b. 원산지로부터의 수출 증명서 사본
 - c.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가공장소(UPI) 확인서 혹은 처리시설 소재지 확인서

* 52A/KEPMEN-KP/2013 52조A에 따르면 UPI는 급속냉동시설 (-18 C) 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을 영하 18도, 그 이하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함.

2) API-U소지자 (46/Permen-KP/2014 제 6조 4항에 따라):

- a. SKP 사본
- b. 원산지로부터의 수출 증명서 사본
- c. 창고소재지 증명서

○ 김/김자반을 포함한 수산물은 쿼터제이며, 어류 및 수산물에 대한 쿼터 신청 절차 및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 a. 신청 서류를 지방 수산부(Dinas Provinsi Perikanan)에 신청하여 추천서 발급
- b. 해당 추천서를 해양 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에 쿼터 신청 *쿼터 신청 시 생선 그림과 수입량을 기재한 서류 추가 필요
- c. 신청서류
 - 시장(구장)의 추천서
 - 무역등록증(TDUP), 생선 임시 검역증(IKIS), 세금공제서(SKP) 무역판매업허가증(SIUP), 세무번호(NPWP)
 - 레스토랑 및 호텔에서의 주문내역서
 - 자카르타 주정부 추천서
 - 해양수산부에서의 수입승인서

○ 김/김자반 원초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 서류와 통관 절차는 이하와 같음.

- a. 수입자 등록 번호발급
- b. 수산물의 검역목적 관련 서류 제출
 -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c.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쓰인 라벨 혹은 서류 동봉(학명 및 교역명, 수량 혹은 용량 , 수입업자의 주소와 이름)

d. 수입 허가 신청

- SKP 와 PMMT(Program Manajemen Mutu Terpadu)사본
- HACCP 적용 증명서
- 또는 GMP-SSOP 사본과 HACCP / ISO 22000
- 원산지에 등록된 수출업자 증명서
- 지역정부기관의 추천서
- 국제수역사무국 (OIE) 회원국이 아닌 곳에서 수입되는 경우 이거나, OIE 회원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수산물 혹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경우, 수산물의 위험분석서 첨부

e. 통관 절차

	관세항구도착	하역	수입관세및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 으로부터 물품인도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인수

- 도착 전 :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 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함.
- 관세 항구에의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음.
-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IB)를 준비함.
-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함.
- 수입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됨.
-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항

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임.

- 또한, 검역의 목적으로 수산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국가의 위생 증명서
 -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수산제품이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잔류량,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의 오염이 없으며, 냉동제품의 경우 제품의 순중량이 95% 이상이며, 수산제품이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시험 성적서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설명서
 - Good Aquacultural Practice (GAP) 인증서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